

#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의안 번호	651
----------	-----

2023. 04. 27.  
주택공간위원회

## I.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 3. 29. 이병도 의원 외 10명 공동발의
- 회부일자: 2023. 4. 3.
-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18회 임시회 제3차 주택공간위원회 (2023. 4. 27. 상정·의결)

## II. 제안설명 요지 (이병도 의원)

### 1. 제안이유

- 조례의 정의와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에 탄소중립을 명시하여 추진방향을 명확히 하고, 공공건축물과 민간건축물의 분야별 녹색건축물 조성 추진 시책을 활성화하도록 규정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정의에 탄소중립의 개념을 명시함(안 제2조).
- 나.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활성화를 조성계획에 명시함(안 제5조 제2항제6호 신설).
- 다.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건축물, 민간건축물의 분야별 정책 추

진사항을 규정하고 정부기관과 민간기관에 대한 협력사항을 규정함(안 제 8조제4항 신설).

### Ⅲ. 검토보고 요지 (오정균 수석전문위원)

#### ■ 개정조례안 발의 배경

- 이 개정조례안은 기후위기<sup>1)</sup> 문제가 대두된 현 시점에서, 건축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녹색 건축물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에 탄소중립<sup>2)</sup>을 위한 녹색건축물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이를 위한 분야별 지원시책을 추진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병도 의원이 발의하여 2023년 3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기온·해수면 상승, 홍수, 가뭄 및 폭염 등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국제사회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파리협정」<sup>3)</sup>을 채택(15.12.)하여 실행 중에 있음.
- 우리나라도 이러한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을 통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2021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sup>4)</sup>하였고, 같은 해 10월에는 ‘2050 탄소중

1) “기후위기”란 기후변화가 극단적인 날씨뿐만 아니라 물 부족, 식량 부족, 해양산성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등 인류 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여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태를 말함(탄소중립기본법 제2조제2호).

2)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상태를 말함(탄소중립기본법 제2조제3호).

3) 2015년 12월 파리에서 채택, '16년 4월 22일 미국 뉴욕에서 서명되어 11월 3일 공식 발표된 파리협정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보다 낮은 1.5℃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전 지구적 장기목표 하에 모든 국가가 2020년부터 기후행동에 참여하며, 5년 주기 이행점검을 통해 점차 노력을 강화토록 하고 있으며, 모든 국가가 스스로 결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5년 단위로 제출하고 국내적으로 이행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음.(출처: 외교부)

립' 선언<sup>5)</sup>의 후속 조치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탄소중립 녹색 성장 추진전략」 등을 수립하면서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특히 우리나라 탄소 총배출량의 약 25%(18.)는 건물 부문이 차지<sup>6)</sup>하고 있음에 따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녹색건축법”)에서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련 정책을 추진토록 하고 있음.
- 서울시의 경우, 녹색건축법에 따라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sup>7)</sup> 확대를 위해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이하 “조례”)를 제정·운용 중에 있으며, 법 제7조 및 조례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sup>8)</sup>”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등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sup>9)</sup>을 위한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공공건축물의 경우 제로에너지 건축(신축) 또는 그린리모델링(기존)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민간건축물에 대한 녹색건축물 활성화 정책은 별도 규정이 없어 서울시 자체적으로 에너지 관리를 추진<sup>10)</sup>하고 있는 상황임에 따라, 이 개정안은 민간건축물과 기존

4) 종전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폐지되고,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되었음('21.9.24.).

5) 2020년10월28일, 국회 2021년 예산안 시정연설(대통령)에서 최초 발표

6) 국토교통부(2021.12.),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 p.3.

7) “녹색건축물”이란 탄소중립기본법 제31조에 따른 건축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을 말함(녹색건축법 제2조제1호).

8) '22년 6월 서울시는 “제2차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2022~2026)”을 수립·운영 중이며, 이는 녹색건축법 제6조에 따른 법정계획임.

9)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 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함(조례 제2조제2호).

10) 서울시는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마련하여 법 제14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과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이를 적용토록 하고 있음

건축물에 대해서도 맞춤형 지원시책을 발굴·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해됨.

## ■ 개정안 주요 내용 및 검토의견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개정안 주요 내용>

(안 제2조제4호 신설) ‘탄소중립’ 개념 정의

(안 제5조제2항제6호 신설)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에 포함될 내용에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활성화에 관한 사항’ 추가

(안 제8조제4항 신설)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분야별 시책사업 유형(4가지) 규정

1.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의무화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
2. 민간건축물의 녹색건축물 도입 참여를 위한 지원 방안
3. 기존 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을 위한 지원사업 발굴
4. 중앙정부기관, 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 먼저, 안 제2조제4호(신설)에서는 ‘탄소중립’의 개념을 상위법인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정의함으로써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도모하였는데, 이는 작년 6월 서울시가 수립한 제2차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검토보고서 붙임2. 참고)에서 탄소중립 및 건축물 분야별 추진 목표 등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조례상의 정의규정이 부재한 상황이었음을 감안할 때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안 제5조제2항제6호에서는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시 포함해야 할 계획내용 중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하였음.

- 이는 탄소중립기본법 제6조에 따라 시장이 5년마다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에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에 관한 사항’

을 포함시킴으로써 향후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안 제8조제4항은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시책을 구체적으로 나열한 것으로서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신규 공공·민간 건축물의 녹색건축물 도입과 관련된 사항과 기존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그린리모델링)<sup>11)</sup>에 관한 사항으로, 이는 관련 국가정책(검토보고서 붙임3. 참고)에서도 제시하고 있는 건축물의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개정의 시의성이 인정됨.
  - 제4호는 중앙정부 및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사항으로, 서울시는 건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국토부와 산림청 등의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sup>12)</sup>하는 등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임.
- 종합하면, 이 개정조례안은 범 정부차원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녹색건축물의 조성 활성화를 통한 에너지 절약 및 탄소중립 실천 등 서울시의 건축정책 방향을 조례에 명시한다는 점에서 개정의 의의가 있겠음.
- 또한, 현행 조례상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방향 및 지원을 위한 기본적 틀은 마련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미비했던 상황에서 국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내용을 신

---

11)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에서는 건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저탄소건물 전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12) “서울시, 10.13(목) 국토부 등과 ‘목조건축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서울시 보도자료

설함으로써 탄소중립 목표 달성 등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탄소중립”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탄소중립을 말한다.

제3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의 재정지원은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기후대응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지원시

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의무화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
2. 민간건축물의 녹색건축물 도입 참여를 위한 지원 방안
3. 기존 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을 위한 지원사업 발굴
4. 중앙정부기관, 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3. (생략)</p> <p><u>&lt;신설&gt;</u></p>	<p>제2조(정의)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탄소중립”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탄소중립을 말한다.</u></p>
<p>제3조(기본원칙) ① (생략)</p>	<p>제3조(기본원칙) (현행 제1항과 같음)</p>
<p>제5조(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생략)</p> <p>②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7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p>1. ~ 5. (생략)</p> <p><u>&lt;신설&gt;</u></p>	<p>제5조(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탄소중립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에 관한 사항</u></p> <p>7. (현행 제6호와 같음)</p>
<p>6. (생략)</p> <p>제8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① (생략)</p> <p>② <u>제1항의 재정지원은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u></p>	<p>제8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제1항의 재정지원은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u></p>

용에 관한 조례」의 기후변화기  
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생 략)

<신 설>

④ (생 략)

용에 관한 조례」의 기후대응기  
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  
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의무  
화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

2. 민간건축물의 녹색건축물 도입  
참여를 위한 지원 방안

3. 기존 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  
환을 위한 지원사업 발굴

4. 중앙정부기관, 타 지방자치단  
체,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⑤ (현행 제4항과 같음)